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91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이종욱·송언석·김종양

이종배 · 최형두 · 송석준

김상훈 • 박수영 • 구자근

박수민 • 박대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 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 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 본문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으로 한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장한 관람객에 대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의 납부 및 이 법 시행 전에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제24조(기금의 조성)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 <삭 제> 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 금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 <삭 제> 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 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 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 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 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 영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으로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

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 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 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7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 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 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 | 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44조(영사 자격자) | |
|---------------|----|
| | |
| | |
| | 취득 |
| 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 수료 |
| <u>한</u> | · |
| | |
| | |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 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삭 제>